

정보접근과 명예훼손

김병국
원광대 신방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정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현대와 같은 대중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유 못지 않게 대양 정보유통체계로서의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은 민주국가에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도 필수적이고, 나아가 정치적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및 대중오락적 차원의 비정치적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정치적 언론이든 비정치적 언론이든 모든 언론 기본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 언론의 자유가 때로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상업주의적 속성으로의 선정주의나 폭로주의적 보도에서 뚜렷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들 수 있다.

언론의 자유라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표출시키고 또 널리 전파시키는 데 있어 제약 받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고 반면 명예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명예를 그대로 지키고 명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되므로 상반관계적 성격이 있다.

언론의 부정적인 측면은 비정치적인 부면에서의 언론 특히 대중오락분야에서의 언론에 더 많은 현상인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부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이유로 언론의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항상 문제되는데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과는 하나의 연속선상의 양편에 위치하여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그만큼 적어지는 상호제약의 관계를 가지는 모순 충돌의 입장에 있다고도 하겠다.

본 주제인 「정보접근과 명예훼손」의 문제는 일응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로 상호관계를 서론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그것은 정보접근이 언론자유 내용의 하나로 반드시 인정될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매스 미디어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스미디어에게 취재,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며 또 정보의 자유로운 수집을 위하여 그 정보원에의 접근권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론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매스 미디어에게 정보접근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명예훼손적 사항에까지도 정보접근권이 가능한가와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접근에서는 어떤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을 살펴 본다.

II. 매스 미디어와 정보접근권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대사회를 일컬어 정보화사회라고도 하는데 실로 우리는 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현대의 고도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불리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능력의 이용이 사회의 각 분야에 크게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에 유통하는 정보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해 사회조직은 보다 확대 복잡해지고 관리시대화 되었다.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의 충격」에서 양이 많고 잡다하고 변화하는 정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에 사로 잡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부적응의 반응으로 첫째, 일체의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형, 둘째, 자기의 전문적 관심분야에 관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무관심한 형, 셋째, 자기가 기왕에 적응해 온 낡은 습관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을 거부하는 형, 넷째, 단순화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봉하는 형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일정한 정보를 절대로 필요로 하며 환경에 대응하여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위하여 자기에게 알맞고 가치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개인이 오늘날의 정보환경에 스스로 적응하여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개인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자유롭게도 평등하게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이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즉 언론기관은 각종 정보를 취재·축적하여 나름대로 해석·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분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그 많은 정보에 접근하여 스스로 자신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매스 미디어와 같은 전문적 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에게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된 곳에 매스 미디어마저도 접근할 수 없다면 국민은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게 되기 때문으로 기능론적 입장에서이다. 실제 매스 미디어에 의한 뉴스의 보도는 뉴스원への 접근, 취재, 보도, 배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그 어느 것을 분리해도 뉴스 보도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스미디어의 정보원으로서의 접근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은 많으며 아직 미국이나 일본의 법정에서도 헌법이 매스 미디어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년에 이르러 특히 미국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뉴스원에의 접근의 권리가 차츰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제정을 보게된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선사인」 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회의공개법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정보와 정보원에서의 접근권이 「알 권리」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나가고 있다.

물론 접근권을 완전한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매스 미디어에게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로 입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이 권리가 앞으로 법적인 지위를 차츰 굳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언론기본법의 제 2 조에서 「모든 국민은……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기관에게 정보청구권을 제 6 조에서 인정하였다. 정보청구권은 취재원과 접근하여 직접 얻지 못한 정보를 법적 청구에 의해 얻어낸다는 것으로 직접 정보 접근권과는 다른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정보접근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서 정보 청구권자를 언론기관에 한정시킨 것과 광범한 예외규정을 둔 점은 비판을 받았다.

정보 접근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프라이(James L. Fly)의 표현처리 매스 미디어가 완전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모든 적절한 뉴스원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이의 경우도 법적 보장의 방향으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III. 명예훼손적 사항에의 정보접근

우리 헌법은 제 21 조 제 1 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면서도 제 4 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에 대한침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실제 오늘날 언론자율의 중요성 못지 않게 언론에 의한 피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된 것으로 상업적, 영리적 언론기업이 독자, 시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공이익과 관계 없는 순전히 사적인 사항도 흥미본위로 가십화하거나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1987년 이래 언론개방화에 따라 갑자기 크고 작은 언론기관이 증설되면서 사이버언론과 사이버기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언론윤리의 확립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법적장치로서 언론자유와 그 한계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관련하여 명확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21 조의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외에도 형법 제 307 조~312 조에, 그리고 민법 제 750~751, 764 조에 명예훼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그 해석 여하로는 명예훼손의 구성이나 위법성의 문제 등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의 개념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것으로 불확정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명예훼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보호해야 할 두개의 법익 즉 언론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어느 한 쪽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균형을 취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오늘날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를 보면 대개 사실을 적시하면서 행한 예가 그렇지 않은 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단순히 즉흥적인 기분으로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을 비방하거나 또는 그의 직업적 및 상업적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사실상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진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느냐 하는 점이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보면 기자가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갖고 가공의 기사를 날조하는 허보와 진실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으로 나타난 오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고의가 후자의 경우엔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언론의 윤리성 차원에서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오보의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와 관련하여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신문 등 매스컴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때문에 때로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기사의 진실성의 입증책임은 신문사측에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신문보도의 신속성의 요구로 인하여 기사의 주요부분이 진실이라는 점만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언론의 진실된 사실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때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보도사실이 진실이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게 되며, 그 보도사실이 진실인 동시에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법성 조작사유로 본다.

신문보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공익목적에 위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원리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기사가 사생활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진실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피보도자의 사회적 지위 및 그 사적인 행위의 내용, 정도 등이 문제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살펴 볼 때 언론자유와 내용으로서 취재, 보도의 자유가 인정되고 또 이런 활동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정보접근권이 언론에게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적 사항에 대하여도 한정적으로 정보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익적 사항으로서 진실에 해당되는 것 및 진실이 아니지만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보도되었다 하여도 위법성,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볼 때 언론기관에 정보 접근권이 인정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역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널리 공중에게 알려짐으로써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진실성, 공익성 문제를 따져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라도 사전에 명예훼손적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접근허용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범죄수사과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청문회 등과 같은 곳에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접근을 차단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하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보접근을 막지 않도록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V. 공적 인물과 명예훼손

공직자나 유명인과 같이 공적 존재인 경우에는 그 지위에서 치루어야 할 소위 유명세라는 게 있다. 특히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될 때에는 그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국가정치인의 경우 국가정치의 중대한 결단과 그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및 그 후보나 그러한 직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명예에 관한 것이든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든 상당한 제한을 받을 각오를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정보접근권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든 안되는 간에 적어도 이러한 인물은 자기에 관한 사항을 기꺼이 밝힐 용기와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즉 매스 미디어의 접근, 취재, 보도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공인물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1966년 동경지방법판소 판결, 최고재판소도 같은 내용)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선정, 파면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공무원 또는 그 후보자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공무원이나 후보자에 관해 알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 내지 그 후보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적부의 판단에는 거의 전인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공인이 자기에 대한 인격권이 대폭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런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정신·심리상의 질환이 유권자에 의해 따져지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공적인 존재라 하여 명예나 사생활을 무한정으로 침해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공공의 존재라도 순전히 사적 생활에 해당한 것은 보호 받아야 한다. 즉 공공사항과 관계가 없는 사생활의 공개를 함부로 해서 안 될 것이다.

또 비록 공적인 존재였다 하여도 그것은 영속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공성을 상실하고 보통 사람과 같이 인격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근래 우리나라에도 각종의 크고 작은 신문, 잡지들이 새로 나오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와 부작용이 심각히 비판되고 언론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즉 언론의 무절제한 자유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격권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다른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간 폐쇄적 체제하에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데도 기인하며

또 그간의 폐쇄적 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이에 대한반작용의 결과라고도 하겠다. 일반대중으로서의 공인과 유명인의 스캔들이 폭로되거나 약점이 밝혀질 때 시원하게 기분풀이가 되거나 재미도 있을 수 있다. 또 역사적 심판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러한 것을 다룬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본래의 궤도를 넘어서지 않게 편집자나 필자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늘날 언론기관이 정보와 자료를 수집, 보관, 전달함으로써 인간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 이런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개인적 인권으로의 인격권의 위기도 심화되어가는 상황에 있다. 신문, 잡지 등 언론기관이 사회적 책임이론의 입장에서 윤리강화와 자율적규제의 선행이 있어야 한다. 법 적용에 있어서도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피해배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사이버 언론사와 기자에 대하여 충분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접근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매스 미디어의 특권으로서 정보 접근권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이 언론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남용,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와 함께 정보 접근권이 인정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든 앞으로 갖게 될 정보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이 예상된다고 하여 취재제한 등 정보접근을 차단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공직자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명예훼손 등이 예상된다고 사전에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미리 접근 자체를 막는다면 보도된 이후에 엄격히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도된 이후에 보도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공공이익 문제를 가려 결정할 사항이지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 문제가 사전적으로 정보접근에 대한 제한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서울대 법대, 서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언론학)

저술: 「매스커뮤니케이션학 개론」,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가」 (역)

현재 원광대 신문방송학과교수